원금손실위<u>험</u>

BNK 부산은행

# 집합투자증권 (요약)상품설명서

- ◈ <u>본 설명서</u>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집합투자증권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이 설명서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와 별도로 판매회사가 고객님께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 본 상품은 일반 예금 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가입정보

	판매사 부여 위험등급	유동성 위험		
금융투자상품명		중도환매	중도환매	중도환매시
		불가	허용	비용발생
한국투자 ACE 미국나스닥 100	2 등급		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높은위험)		U	

본 상품은 해외 자산에 대한 별도의 <mark>환혜지를 시행하지 않으므로 외화표시통화 가치 변동에 따른추가 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mark>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상품의 주요 위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 1 항의 규정과 연계된 투자성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2024 년 3 월부터 결산이 도래하는 편드의 위험등급은 97.5% VaR 모형을 기준으로 산정(결산 도래 전까지는 직전 위험등급 산정 기준인 수익률 변동성으로 산정)되며, 은행은 각 편드의 운용회사에서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합니다.
- 중도환매시 비용발생은 개별상품마다 세부내용(중도환매시 비용발생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사(은행)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설정 3년 미만 : 투자자산 기준 / 설정 후 3년 경과 : 97.5% VaR 또는 수익률변동성 모형 기준 자산운용사가 작성하고 판매직원이 제공한 (간이)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모일 경우 별도 설명서 참고 투자상품 내용 위험등급의 의미 위험등급 97.5% 유의사항 투자자산의 기준 ①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위험선호도가 (매우)높은 투자자를 위한 50% 25% ②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상품으로써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1등급 높은 추과 추과 위험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넘어서는 (매우)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높은 ①고위험자산에 8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50% 25% 2 등급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②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이하 이하 위험 적합한 상품입니다. ①고위험자산에 8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다소 15% ②최대손실률이 20%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높은 3 등급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이하 이하 위험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①고위험자산에 5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충분히 인지하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보통 10% 20% ②중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4등급 이하 이하 위험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상품입니다. 투자원금의 손실 위험은 최소화하고, ①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낮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5% 10% ②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5 등급 위험 이하 이하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매우 ①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0.5% 1% ②단기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6등급 이하 이하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97.5% VaR 모형 : 최대손실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해 과거 3 년 일간 수익률에서 하위 2.5/100 분위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을 연환산하여 산출

#### ■ 민원처리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안내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영업점, 고객센터(1588-6200) 및 홈페이지(www.busanbank.co.kr)에 문의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 36 조 1 항에 따라 금융감독원(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비교표)

## 예금성 상품(예·적금)과 구별되는 특징

- □ 집합투자증권(펀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 조 3 에서 정의하는 「투자성 상품」 에 해당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 조 1 에서 정의하는 「예금성 상품(예·적금)」과는 아래와 같이 구별됩니다.
  - ① (원금비보장)집합투자증권은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본손실위험이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② (수수료)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선취수수료가 있는 경우 고객님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③ (보수)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고객님께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습니다.
  - ④ (해지시 불이익)집합투자증권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시의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되므로 투자원본보다 작아질 수 있으며 환매수수료가 있는 경우 부담하게 됩니다.

#### [참고: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대상별 분류]

	· · · · = = · · · ·
중권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또는 증권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
부동산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
특별자산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특별자산에 투자
혼합자산펀드	운용에 있어서 증권·부동산·특별자산 관련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
MMF	Money Market Fund 의 약자로서 펀드 재산의 전부를 단기금융 상품에 투자

## ■ 민원 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 Q. 펀드를 가입할 때 부담해야하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나요?

편드의 운용구조를 살펴보면, 판매사,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가 관여하게 되며 이러한 기관별로 보수 및 수수료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판매수수료는 고객이 입금 시 차감되어 원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판매보수, 운용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은 투자원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순자산총액 산출 시 차감되는 비용입니다.

#### Q. 펀드를 신규, 매입, 환매 취소가 가능한 시간은?

펀드의 신규, 매입, 환매의 취소 가능한 시간은 개별 펀드마다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취소 가능한 시간이 지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폐쇄형'으로 설정된 펀드의 경우 환매가 제한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 펀드 환매 시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세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편입된 주식 부분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해를 보았을 경우에도 과세대상 소득(채권이자, 채권매매 차익, 주식 배당소득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 펀드의 결산, 재투자는 무엇인가요?

결산은 편드의 운용성과를 계산하여 이익금과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로, 통상 설정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매년 실시하게 되며 펀드별로 결산일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익금에서 신탁보수, 제비용, 세금 등을 공제하고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이익분배금이라고 하며, 이익분배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수익증권을 다시 매입하는 것을 재투자라고 합니다. 이익금 중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의 매매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환매시까지 유보하게 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결산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상품 설명 내용

기대수익	펀드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향후 시장상황 및 변동에 따라 수익손실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대수익의 제시가 불가능합니다 단, ELF(DLF), 목표전환형 펀드 등의 경우에는 수익구조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시 손익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손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및 손실추정액	펀드는 편입자산의 시가평가에 따라 원금의 0% ~ 100%(원금전액 손실) 손실 발생이 가능합니다. ELF(DLF)는 투자설명서「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항목 참고
계약종료 요건	ELF(DLF), 목표전환형 펀드 등과 같이 계약상 만기가 있는 펀드들은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종료 요건은 투자설명서「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항목 참고
목표시장 설정근거	목표시장은 고객 유형, 지식과 경험, 위험추구성향, 보유가능기간, 손실감내능력, 투자목적을 고려한 투자 기간을 감안하여 설정합니다. 목표시장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하며 반드시 고난도 상품 목표시장 및 시나리오 분석결과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실 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손실 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하며 반드시 고난도 상품 목표시장 및 시나리오 분석 결과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리 안내

구분	내용			
숙려제도와 숙려콜 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하실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는 2 영업일의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숙려기간 종료 후 2 영업일간 진행되는 모니터링콜(숙려콜)이 진행됩니다. 해당 콜 진행시 정상적인 응답이 아닌 경우 가입하신 상품의 철회의사로 판단되어 신규자동취소되오니 이 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권	투자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기간이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합니다. [주의] 모집기간이 있는 상품은 설정일 전 영업일 17 시까지 철회가 가능하며, 대기시간 및 전산조작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해당 시간이 경과되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위법계약 해지 사유가 있음을 고객이 서면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 해당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의 기간을말하며,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 년 이내여야 합니다. 단,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 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10 년 보관하는데 일부 자료의 경우 5 년까지만 보관하며 해당 보관기관 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열람의 목적·범위·방법을 기재한 열람요구서를 작성하여 영업점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임의해지) 펀드를 설정한 자산운용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펀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펀드를 해지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사는 그 해지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 청구를 받아 신탁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 경과 시점에서 설정 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경과한 이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 원본이 50 억원 미만 <sup>6</sup> ※ 위의 3, 4 호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없으며, 자산운용-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중 처리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계약해지 시 불이익 사항 포함)	(의무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편드)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투자자는 위의 임의해지 및 의무해지 발생시, (의무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편드)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1. 환매수수료 및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2. 공제한 금액 및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한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설명의무 이행 확인	가입하신 집합투자증권에 대해 판매직원이 설명한 내용과 본 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판매직원	(인/서명)	
	본인은 집합투자상품 계약서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중요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투자자	(인/서명)	
		대리인	(인/서명)	
			(인/서명)	

※본 설명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설명 후 사본을 반드시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거부불가)



